

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수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1.  
발의자 : 박수민 · 김선교 · 성일종  
이종욱 · 박덕흠 · 정연욱  
추경호 · 박정훈 · 김소희  
구자근 · 곽규택 · 박성민  
이양수 · 강명구 · 조정훈  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,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.

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,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가목).



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”을 “임대하되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
1. “공공주택”이란 제4조제1항	1. -----
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	-----
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	-----
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	-----
의 재정이나 「주택도시기금	-----
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	-----
하 “주택도시기금”이라 한다)	-----
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	-----
법률에 따라 건설, 매입 또는	-----
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	-----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-----
주택을 말한다.	-----
가. <u>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</u>	-----
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	-----
급하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	-----
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	-----
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	-----
(이하 “공공임대주택”이라	-----
한다)	-----
가. <u>임대하되 임차인이 요청</u>	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
	한 주택 또는 임대한 후
	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
	공급하는 주택-----
	-----
	-----
	-----

나. (생략) 1의2. ~ 4. (생략)	----- 나. (현행과 같음) 1의2. ~ 4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